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장규권 의원·고영찬 의원·윤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,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1인가구 지원사업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
- 2)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신설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 나. 검토의견

### 1) 개정 이유

○ 1인가구 지원사업을 사무 위탁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고,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음

### 2) 주요 내용

가) 1인가구 지원사업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

나)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·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 신설)

-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·점검을 하고,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

### 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1인가구 사업을 위탁할 경우 관련 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도 점검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책 시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